

내규번호 : 1-01-2189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수출입되는 보세화물의 취급에 관하여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세청 고시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및 보세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내에서(이하 "자유무역지역 등"이라 한다) 화물의 안전관리 및 신속한 반출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화물관리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하 "입주기업체 등"이라 한다)의 화물관리 적정여부 확인 및 조치
 2. 하기결과 이상화물 등에 대한 확인 및 사후조치
 3. 제9조에 따른 계류장 GATE 반출입 승인(거대·장척화물 등)
 4. 제13조에 따른 B/L제시 인도화물의 반출확인
 5. 보수작업 승인 및 완료 확인
 6. 반출입신고 전산입력 착오에 대한 정정
 7. 장치화물 및 출고화물에 대한 불시점검
 8. 보세운송도착 이상화물보고 건에 대한 확인 및 신고지 세관 통보

9. 보세판매장물품 반출 등록 및 까르네수출물품의 도착확인 전산등록
10.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에 따른 복합환적화물(복합일관운송화물 포함)의 운송 시 도착지 및 중량 정정
11. 외국물품 등의 역외작업신고(역외작업포괄신고 포함) 수리 및 역외작업 반출입신고 수리 등
12. 그 밖에 화물관리를 위하여 세관장이 지시한 사항
 - ② 수입담당세관공무원은 자유무역지역 등에서의 수입신고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수출담당세관공무원은 자유무역지역 등에서의 국외반출신고·수출신고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하기

제3조(하기장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화물의 하기장소는 인천국제공항 항역(공항시설법상의 공항구역) 내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하기통로) ① 제3조에서 정한 하기장소까지의 하기통로는 차량동선 체계상 최단거리로 한다.

②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인 공항물류단지까지의 하기통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A통로 : 계류장(RAMP) → 직반송로(지하전용통로) → 공항물류단지
2. B통로 : 화물터미널 현도장 → 화물터미널지역 내 내부순환도로 → 직반송로(지하 전용통로) → 공항물류단지
3. C통로 : 화물터미널 현도장 → 공항동(東)로 → 공항물류단지

③ (삭제)

제5조(하기운송업자) ① 제3조에 따른 하기장소까지의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한 조업사, 간이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 중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가 D등급 이상이고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보세운송업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연도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전에 세관장에게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기운송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기운송업자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하역업자 등록증(조업사에 한한다)

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서(간이보세운송업자에 한한다)

다. 보세운송업자 등록증 및 담보제공서류(보세운송업자에 한한다)

라. 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및 보세구역 운영인(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과의 운송계약서

마. 불법유출행위방지서약서 원본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보유장비 현황

다.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③ 보세운송 담당공무원이 하기운송업자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하기운송업자신고필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및 기재사항

2. 하역업자 등록취소,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취소 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상실 요건 발생 여부

- ④ 하기운송업자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2항 제1호 라목의 운송계약 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라목의 운송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조업사 등록 유효기간,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기간 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하기운송업자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하기운송업자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하역업자 등록취소,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취소 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상실이 되거나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운송계약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하기운송업자 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하기운송) ① 하기운송은 제5조에 따라 신고된 하기운송업자가 할 수 있다.

- ② 하기운송구간은 계류장 또는 화물터미널에서 제3조에 따른 하기장소까지로 한다.
- ③ 하기운송은 화물터미널에서 화물 분류 후 House AWB 단위로 하되, House AWB이 없는 화물은 Master AWB 단위로 운송할 수 있다.
- ④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분류 완료 후 해당 물품을 지정된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인수받은 운영인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간내에 지정된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⑤ 계류장 출입구를 통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제9조에 따른다.

제7조(ULD 단위 하기운송) ① 제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기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ULD 단위로 동일 하기장소로 운송되는 경우 ULD 단위로 운송할 수 있다. 단, 관리대상화물, 위험물 등이 적입된 ULD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기장소에는 화물분류(Break Down) 작업이 가능한 장소, 장비 및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장소, 장비 등 요건이 미비되거나, 화물분류(Break Down) 작업을 하기장소 내에서 하지 아니한 경우 등 화물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LD 단위 하기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화물분류(Break Down) 작업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입주기업체 등은 항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사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하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류장인도 대상물품)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계류장인도대상물품은 『대량으로 수입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으로 한다.

제8조의1(계류장내 일시양륙 장소 등) ① 항공기에서 양륙하여 동일 공항 내에서 입항 후 10일 내에 환적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일시보관하는 화물은 하기장소로 반입하지 않고 「항공사별 환적화물 처리장소」(별표 9, 이하 “CTA”라 한다)에서 일시 대기하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다. 다만, 재해·기적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장치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CTA에서는 ULD 해체 및 재작업 등 화물분류 작업(보수작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단, 작업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항공기간 환적화물은 다른 화물과 구분되도록 펜스 등으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일시 대기하여야 하고 보수작업, 환적화물 폐기 사항 발생 시 화물터미널로 이동 후 해당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적화물이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경우 지체없이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으로 이동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CTA에서 일시 대기하는 환적화물의 검사 및 대기상황, 기적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항공사는 CTA에서 일시 대기하는 화물의 반출입내역을 기록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에 2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반입화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에게 즉시 반입이상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CTA의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항공사는 작업 중 수출입의 금지물품 및 총포·도검류·마약류 등 국민안전위해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항 항역 내 계류장 출입구를 통한 물품반출) ① 조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화물터미널이 아닌 계류장 출입구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항항역내계류장출입구를통한반출확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물품·보세운송신고수리 물품, 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검역대상물품, 통관우체국에서 인수하는 국제우편물, 제5호 및 제6호의 물품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1. 대형ULD에 적재된 거대물품(다만, 소형 Pallet단위로 분리 가능한 물품은 제외)
2. 자유무역지역 등에서의 화물이동작업이 곤란한 장치물품
3. 외부충격에 민감하여 반출작업 중 수평 유지가 필요하거나 화물안전확보가 필요한 거대물품
4. ULD에 적재된 상태로 하기운송하는 특급탁송물품
5.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으로 배정되어 운송하는 화물
6. 화물분류를 위하여 조업사의 조업창고로 운송되는 물품
7. 제7조에 따라 ULD에 적재된 상태로 동일 하기장소로 하기운송하는 물품
8. 그 밖에 세관장이 계류장 출입구를 통한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공무원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항항역내계류장출입구반출확인대장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고 반출확인서를 교부한 후 확인일로부터 2년간 신청서를 보관한다. 다만,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대장기록을 생략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출확인을 받은 자 또는 계류장에서 당해 물품을 인수한 자는 통과하고자 하는 계류장 출입관리자에게 반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물품 및 보세운송신고수리 물품은 보세사가 확인하여 '계류장 직반출 확인(규격: 6×4cm)(별표 1)' 고무인을 수입신고필증·보세운송신고필증 사본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조업사는 제3항에 따라 보세사가 당일 확인하여 계류장 출입관리자에게 제출한 내역을 취합하여 익일 오전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화물관리 및 출입자 통제

제10조(관리자 지정·운영) ①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 명단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전담 관리자가 퇴직 및 해직되거나 보직변경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체는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고, 전담 관리자 또는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이 관계자료의 열람, 제출 및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작업 결과등록) 세관공무원은 구분·분할·합병 기타 보수작업을 한 결과 당초 반입된 포장갯수(C/T)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관수출입화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반입물품에 대한 X-ray 검색) ① 세관장은 안보위해물품 및 밀수품 등을 적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등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X-ray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기업체 등에게 X-ray검색기간, 검색대상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② 자유무역지역 등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X-ray검색은 해당 입주기업체 등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③ 입주기업체 등은 소속직원 중에서 X-Ray 판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받은 자를 Xray검색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색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B/L제시 인도) ①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B/L제시 인도물품 반출승인 절차”를 적용하여 AWB 제시 현도장에서 즉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는 물품

가.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법 제93조 제9호)
다.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

라.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마.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바. 기록문서와 서류

2. GBL(Government Bill of Lading) 물품

3. 검역기관에서 인수하는 검역대상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물품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거나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반출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AWB 원본("Original 2"를 의미하며, GBL 및 검역대상물품은 사본제출 가능)

2. 인수증(별지 제5호 서식)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은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한 사전정보가 있는 경우는 담당과장의 지시에 따라 물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1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은 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B/L제시 인도물품의 서류 검토 및 물품검사 결과 과세대상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과세대상물품확인(규격: 6 x 3cm) (별표2) 고무인을 AWB 원본 여백에 날인하여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세관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인도하는 때에는 관련서류가 당해 물품의 인수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AWB상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무인과 함께 접수번호, 접수일자 등의 기재 및 서명(날인)하여 AWB 및 인수증을 즉시 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상에 반출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생략물품확인(규격: 6 x 3cm) : (별표3)

2. 외교행낭물품확인(규격: 6 x 3cm) : (별표4)

3. GBL화물확인(규격: 6 x 3cm) : (별표5)

4. 검역물품확인(규격: 6 x 3cm) : (별표6)

제14조(물품검사)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검사계획을 통보하고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 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입·반출되는 물품 중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에 대해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1. 법규준수도측정결과 평가등급이 낮은 입주기업체에서 반출입하는 물품

2.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가 갖추어져있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반출입하는 물품

3. 화물의 특성상 우범성이 있거나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4. 품명위장 및 수량차이가 있는 물품

- 5. 화물터미널로 반입된 수입검사지정 물품으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또는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6. 그 밖에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 ③ 제2항 제5호에 따라 화물터미널의 수입검사 지정물품을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제17조(집단화지역내 운송)를 적용한다.

제15조(조사중인 화물의 관리) ① 수입통관업무 담당과장 등 조사의뢰부서의 장(이하 "조사의뢰과장"이라 한다)은 수출입화물을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담당과장(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에게 조사의뢰하였거나, 조사의뢰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화물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물업무 담당과장은 조사의뢰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의뢰 및 조사의뢰결과 내역을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입주기업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체 등은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의뢰내역을 통보받은 물품에 대하여 "특별관리화물" (별표7)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별 포장에 부착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 등은 세관공무원이 조사의뢰물품에 대해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으로 이고를 명령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입주기업체 등은 조사의뢰물품에 대해 화주가 신고필증 등에 의해 반출 요청한 경우 조사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종결이 되지 않은 경우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체화물품의 별도관리) 입주기업체 등은 체화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장소에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집단화지역내 운송) ①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운송 특례대상 집단화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천국제공항 항역 내 집단화지역 : 제3조 제1호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2. (삭제)

- ② 집단화지역 내 운송은 보세운송차량 또는 하역업체의 차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집단화지역 내 보세화물의 운송은 운송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③ 집단화지역 내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간 또는 보세구역간에 화물을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집단화지역 내 화물반출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부를 반출지 입주기업체 등에게 제출하여 입주기업체, 보세사 또는 화물관리인의 확인을 받아 1부는 반입예정지 입주기업체 등에게 교부한다.
- ④ 반출지 입주기업체 등은 제출된 반출입신청서와 현품이 일치할 경우 반출을 허용하고 즉시 세관에 반출신고한 후 반출입신청서 1부는 2년간 보관한다.
- ⑤ 반입지 입주기업체 등은 반출입신청서와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세관에 반입신고하고 화물반출입신청서 1부는 입주기업체, 보세사 또는 화물관리인이 서명 후 2년간 보관한다.
- ⑥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입검사 지정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반출지 입주기업체는 자체 전자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수입검사 지정물품 이고반출입 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된 물품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출신고하고 현품을 제2항에 따른 운송인에게 인계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운송된 수입검사 지정물품을 반입하는 화물관리인은 자체 전자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수입검사 지정물품 이고반출입 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된 물품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운송인 및 입주기업체 등은 반출입화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입지 입주기업체 등은 반입화물이 반출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하여 도착한 경우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이상내역에 대하여 조사 후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물품의 통로지정) 집단화지역 내 운송화물 중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이하 "통합물류창고"라 한다)와 출국장의 인도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매장(보관창고 포함)간 반출입물품의 운송통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A통로 : 통합물류창고 ↔ FG1(G4) 출입통제소 ↔ 공항계류장 ↔ 제1여객터미널 동·서편 화물E/V(No.49, No.50, No.7, No.8)(3층) ↔ 동·서편인도장(4층)
2. B통로 : 통합물류창고 ↔ FG1(G4) 출입통제소 ↔ 공항계류장 ↔ 제1여객터미널 동·서편 엔틀러 화물E/V(No.67, No.59) ↔ 각 보세판매장의 매장(보관창고 포함)(3층·2층)
3. C통로 : 통합물류창고 ↔ FG1(G4) 출입통제소 ↔ 공항계류장 ↔ 제2여객터미널 동·서편 화물E/V(No.539, No.XXX, No.495, No.496) ↔ 점창고(지하2층), 출국장(3층)
4. D통로 : 통합물류창고 ↔ FG1(G4) 출입통제소 ↔ 공항계류장 ↔ 제2여객터미널 동·서편 화물E/V(No.66, No.52) ↔ 인도장(4층)
5. E통로 : 통합물류창고 ↔ FG1(G4) 출입통제소 ↔ 공항계류장 ↔ 탑승동 동·서편 화물E/V(No.28, No.15) ↔ 각 보세판매장의 매장(보관창고 포함)(3층·2층) ↔ 인도장(4층)
6. F통로 : 제1여객터미널 동·서편 엔틀러 화물E/V(No.67, No.59) ↔ 탑승동 동·서편 화물E/V(No.28, No.15)
7. G통로 : 제1여객터미널 동·서편 엔틀러 화물E/V(No.67, No.59) ↔ 제2여객터미널 화물E/V(No.66, No.52)

제19조(자유무역지역 내 화물이동) 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입주기업체간에 외국물품등 이동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반출입신고가 곤란한 업체는 화물관리공무원에게 입주기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받고 외국물품 등을 이동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 등은 환적·반송화물 이고반출 시 환적·반송물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환적·반송화물 라벨(별표8)을 부착하고, 환적·반송화물 이고반입 시 환적·반송라벨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세관에 보고한다. 다만, 물류단지로 하기운송 되는 환적·반송물품은 반입창고 입주기업체 등이 환적라벨을 부착한다.

③ 보수작업을 위하여 제2항에 의한 환적·반송라벨의 훼손이 필요할 경우 입주기업체 등은 작업 전에 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은 작업 완료 후 환적·반송라벨을 재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자유무역지역 등 출입자 통제) 입주기업체 등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 및 보세구역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사유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출입증을 교부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체, 보세운송업체 및 입주기업체 등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된 유관업체는 화물관리를 위한 세관장의 다음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등 출입자·출입차량 통제
2. 실물분류, 화물 상하차 등 현장 작업 지연 방지를 위한 독려
3. 그 밖에 입주기업체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반 지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종전의 내규에 따른다.

제3조(폐지규정)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인천공항세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내규 (관리번호 2-01-606, 2004.12.22)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④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이 내규 시행전에 신고한 하기운송업자는 이 내규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6월 20일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내규 제3조, 제4조, 제17조는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부칙<관세청고시 제2016- 14호, 2016.314>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1월 23일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내규 제3조, 제4조, 제17조는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부칙<관세청고시 제2016- 14호, 2016.314>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5일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내규 제3조, 제4조, 제17조는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부칙<관세청고시 제2016- 14호, 2016.314>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류장 직반출 확인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보세사 ○ ○ ○ (인)

(별표2)

과세대상물품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인천세관 (인)

(별표3)

수입신고생략물품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인천세관 (인)

(별표4)

외교행낭물품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인천세관 (인)

(별표5)

GBL화물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인천세관 (인)

(별표6)

검역물품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인천세관 (인)

(별표7)

특 별 관 리 화 물			
조사의뢰일자		의 료 부 서	
입주기업체명 (보세구역명)		화주(신고인)	
화물관리번호		B / L 번 호	
품 명		수량 / 중량	/
<p>본 화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에게 사전통보하시기 바랍니다.</p> <p>200</p> <p>특허보세구역(입주기업체 포함) ○○○ 운영인</p>			

(별지 제2호 서식)

하기운송업자신고필증

신청번호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 보세구역 (입주기업체 포함)			
유효기간			
보유차량 현황	총 대 (유개차 : 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하기운송업자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공 항 세 관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항항역내 계류장 출입구를 통한 반출확인(신청)서					
허가번호	040 -				
운항정보	편 명		입 항 일	20 . . .	
출입구역	<input type="checkbox"/> GATE 2 <input type="checkbox"/> GATE 5 <input type="checkbox"/> GATE 6 <input type="checkbox"/> GATE ()				
화물구분	<input type="checkbox"/> 하기운송물품 <input type="checkbox"/> 집단화지역내운송물품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물품 <input type="checkbox"/> 검역대상물품 <input type="checkbox"/> 수입신고수리물품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거대화물 <input type="checkbox"/> 대형ULD적재물품 <input type="checkbox"/> 장척물품 <input type="checkbox"/> 충격에 민감한 중량화물로서 수평유지가 필요한 물품 <input type="checkbox"/> ULD적재상태로 하기운송하는 특송물품 <input type="checkbox"/>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으로 배정되어 운송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화물분류를 위하여 조업사의 조업창고로 운송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ULD에 적재된 상태로 동일 하기장소로 하기운송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기타()				
운송사항	회 사 명		차량번호		
	성 명		반출시간	: ~ :	
	연 락 처		운송목적지		
운송물품					
MRN-MSN-HSN	MAWB NO. (HAWB NO.)	포장종류 (ULD NO.)	포장 갯수	중량(kg)	품 명
<p>「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항역 내 계류장 출입구를 통한 반출 확인을 신청합니다.</p> <p>20 . . .</p> <p>신청자(조업사):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인 천 공 항 세 관</p> <p>위와 같이 확인함 확인자 인천공항세관 직급 성명 (인)</p>					

※ “허가번호”는 보세구역부호(8)+일련번호(5)를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수입검사 지정물품 이고반출입 통보서

		① 통보일자 20		
② 반출지 장치장소	(상호)	③ 반입지 장치장소	(상호) 지정장치장	
	(부호)		(부호) 04002549	
④ 운송인	(상호) 협동통운			
	(부호) 040002			
⑤ 이고대상 화물내역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품명	포장개수	중량
⑥ 반출입사유 수입검사 지정으로 이고 반출입 대상				

(별지 제8호 서식)

계류장내 일시보관 장소(CTA)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즉시
※ 신청자: (항공사)	기간연장승인번호			
	※ 하기신고수리일자			
	※ 하기신고수리번호			
※ 연장사유	※ 연장기간 : 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 장치장소:			
※ 장치물품내역				
화물관리번호	입항일	품 명	포장개수	중 량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제5항 및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8조의1에 따라 위와 같이 장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공항세관장 귀하		위 신청사항을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제5항 및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8조의1에 따라 장치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공항세관장 직인		
수수료	없음	귀하		